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코리아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(UH) [채권]

□ 변경 사유 :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18. 9. 18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_ 보수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8. 7. 기준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7. 9. 30. 기준	<u>2018. 8. 31. 기준</u>
[1]. 투자전략			
4. 운용전문인력			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8. 7. 기준</u>
[1]. 투자전략			
5. 투자실적 추이	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4. 집합투자업자	회사 주소 변경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, 10 층(여의도동)	<u>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(성수동 1 가)</u>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7. 9. 30. 기준	<u>2018. 8. 31. 기준</u>
가. 운용전문인력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8. 7. 기준</u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
 관한 사항
 나. 과세

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
 에 대한 과세
공제제도 : 종합소득금액
 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
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
 액 1 억 2 천만원 초과)
 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
 중 300 만원 한도로
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
 세액공제)

5) 퇴직연금제도의 과세
 ③ 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
 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
 내의 금액(종합소득금액
 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
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
 액 1 억 2 천만원 초과)
 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
 에 납입한 300 만원 이
 내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
 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
 700 만원 한도로 12%에
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
 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
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
 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
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
 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
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8. 7. 기준</u>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


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8. 7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8. 7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회사 주소 변경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 로 66, 10 층(여의도동)	<u>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(성수동 1 가)</u>